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25

발의연월일: 2025. 4. 7.

발 의 자:오세희·박지원·이재관

박용갑 • 어기구 • 김 윤

박해철 • 박희승 • 허성무

임호선 · 정진욱 · 이광희

김남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소상공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소상공인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시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경제 주체의 한 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마련을 통해 정부 의 소상공인 지원이 한시적 또는 시혜성 지원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보호에 초점을 둔 현행법상 기본계획을 소상공인

의 창의적·자주적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개편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구조 고도화, 디지털화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 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법률 제 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지원 기본계획"을 "육성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지원 기본계획"을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기본계획"이라"를 ""종합계획"이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본계획을"을 "종합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을 "종합계획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본계획의"를 "종합계획의"로 한다.

- 1. 소상공인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 3. 소상공인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 4.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 9.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 13.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중 "지원"을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본계획에"를 각각 "종합계획에"로, "지원"을 각각 "육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본계획의"를 "종합계획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장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제2장 소상공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체계 수립 및 운영 체계 제7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제7조(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 합계획 수립·시행) ①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 인의 보호 ㆍ육성을 지원하기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획-----"종합계획"이라-----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② 종합계획을-----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종합계획에는----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 1. 소상공인 육성 정책의 기본 향 목표와 추진방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 3. 소상공인 육성과 관련된 제 에 관한 사항 도 및 법령의 개선

- 4.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 4.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 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
- <신 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④ -----종합계획의------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 장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ㆍ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 한 사항
 - 7. 소상공인 업종별 육성 및 발 전방안
 -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 화에 관한 사항
 - 9. 소상공인 인력 확보의 지원 에 관한 사항
 - 10. 소상공인의 청년인력 채용 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 성에 관한 사항
 - 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 한 사항
 -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 13.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령으로 정한다.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 인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 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 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③ ~ ⑥ (생 략)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① (생 략)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생략)

제8조(소상공인 <u>육성</u>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연차보고) ① -
<u>종합계획에</u>
<u>육성</u>
2
<u>종합계획에</u>
^ \l
<u>육성</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 2. <u>기본계획의</u> 수립·시행에 관 한 사항
- 3. ~ 6. (생 략)
- ③ ~ ⑦ (생 략)

- 2. <u>종합계획의</u>-----
- ----
- 3. ~ 6. (현행과 같음)
- ③ ~ ⑦ (현행과 같음)